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급속한 교통기술 발전에 대응하여 미래 교통혁신을 선도하고, 기존의 공급자 관점에서 탈피하여 수요자 관점에서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381호, 2023. 4. 18. 공포, 2024. 10. 19. 시행)됨에 따라,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의 수립 및 첨단모빌리티 친화적 도로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교통시설 개발사업 시행 시 수립하여야 하는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의 대상 사업·규모, 수립범위, 내용 및 방법 등을 규정(안 제4조의 2, 별표 2 및 별표 3)
- 나.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첨단모빌리티 친화적 도로환경의 설계 원칙과 기준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 규정(안 제4조의3)
- 다. 첨단모빌리티 친화적 도로 환경의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방법 등 마련(안 제4조의3)
- 라. 실증특례 책임보험 기준 보완(안 제8조제1항제3호)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또는 일정 수요 이상인 경우”는 별표 2와 같으며,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의 수립 범위는 별표 2에 따른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 대상 사업 시행으로 교통량이 새롭게 유발되거나 변경되는 지역으로 한다.

②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③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을 제출받은 실시계획 등의 승인권자는 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모빌리티지원센터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빌리티지원센터는 검토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4조의3(첨단모빌리티 친화적 도로환경 조성) ①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첨단모빌리티의 예상 이용량이 현저히 적어서 첨단모빌리티 친화적 도로환경 조성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2. 첨단모빌리티 친화적 도로환경 조성 시 다른 이용자의 통행이나 안전을 저해하여 도로 신설·확장 또는 개량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첨단모빌리티 친화적 도로환경 조성으로 다른 도로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시범사업의 효과, 정책과의 부합성, 시범사업 계획의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상 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그 밖의 손해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금액 별표를 별표 1로 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2024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 대상 사업의 범위(제4조의2제1항 관련)

구분	대상사업의 범위
가. 도로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 제2호에 따른 일반국도, 제4호에 따른 지방도로서 총길이 10km 이상인 도로의 신설·확장·개량 사업
나. 철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 또는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로서 총길이 15km 이상인 철도건설사업
다. 공항	「공항시설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비행장 및 공항으로서 연간 350만 명 이상의 여객처리시설을 포함한 비행장개발사업 및 공항개발사업
라. 항만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계류시설 및 나목에 따른 여객이용시설로서 연간 40만명 이상의 여객이용시설의 개발사업
마. 터미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른 터미널 개발사업 중 터미널 대합실 면적이 1,800㎡ 이상인 사업
바. 복합환승센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및 제2호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광역복합환승센터의 개발사업

■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제4조의2제2항 관련)

1. 접근성 향상

- 가. 대중교통을 통한 교통거점과의 연계 체계 구축
- 나. 승용차, 택시 이용자를 위한 도로 연결 개선
- 다. 보도 확충 등 보행자의 이동성 제고
- 라. 자전거, 개인형 이동수단 등 퍼스트·라스트마일 수단 제공

2. 안전성 향상

- 가. 교통시설 접근 도로 및 교통시설 내에서의 보행자 통행 안전성 개선
- 나.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의 교통시설 접근 및 주정차 시 안전성 확보
- 다. 자율주행차 등 첨단모빌리티의 안전한 운행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
- 라. 교통시설 내 혼잡 또는 응급상황 시 피난 대책

3. 편의성 향상

- 가. 개인형 이동수단의 충분한 주정차시설 제공
-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충전시설의 적정한 용량과 위치 선정
- 다. 대중교통, 개인형 이동수단 등의 최적 환승경로 설계
- 라. 픽업존의 설치 등 도로 혼잡 완화를 위한 방안

4. 그 밖에 모빌리티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4조의2(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또는 일정 수요 이상인 경우”는 별표 2와 같으며,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의 수립 범위는 별표 2에 따른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 대상 사업 시행으로 교통량이 새롭게 유발되거나 변경되는 지역으로 한다.</u> <u>②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u> <u>③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을 제출받은 실시계획 등의 승인권자는 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모빌리티 지원센터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빌리티지원센터는 검토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u>
<u><신 설></u>	<u>제4조의3(첨단모빌리티 친화적 도</u>

로환경 조성) ①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첨단모빌리티의 예상 이용량이 현저히 적어서 첨단모빌리티 친화적 도로환경 조성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2. 첨단모빌리티 친화적 도로환경 조성 시 다른 이용자의 통행이나 안전을 저해하여 도로 신설·확장 또는 개량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첨단모빌리티 친화적 도로환경 조성으로 다른 도로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시범사업의 효과, 정책과의 부합성, 시범사업 계획의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상 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8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책

제8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책

임보험 등) ① 법 제12조제9항 본문에 따른 책임보험의 보험금 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지 급되는 보험금액은 제1호가목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제 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2. (생략) <u><신설></u> ② ~ ⑤ (생략)	임보험 등) ① ----- ----- ----- -----. ----- -----. 1. 2. (현행과 같음) <u>3. 그 밖의 손해인 경우: 국토교 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 른 금액</u> ② ~ ⑤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총괄과	
연 락 처	(044) 201 - 3818